

등록번호	농정과-23171
등록일자	2025. 9. 18.
결재일자	2025. 9. 18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농촌개발 팀장	농정과장	경제산업 국장	부시장	
이승규	신태호	김기석	출장	김광철	
협 조					

# 2025년 농촌민박사업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



삼 척 시  
[농 정 과]

# 2025년 농촌민박사업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

- ◇ 노후화 된 농촌민박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 만족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
- ◇ 농어촌민박 이용률 제고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## I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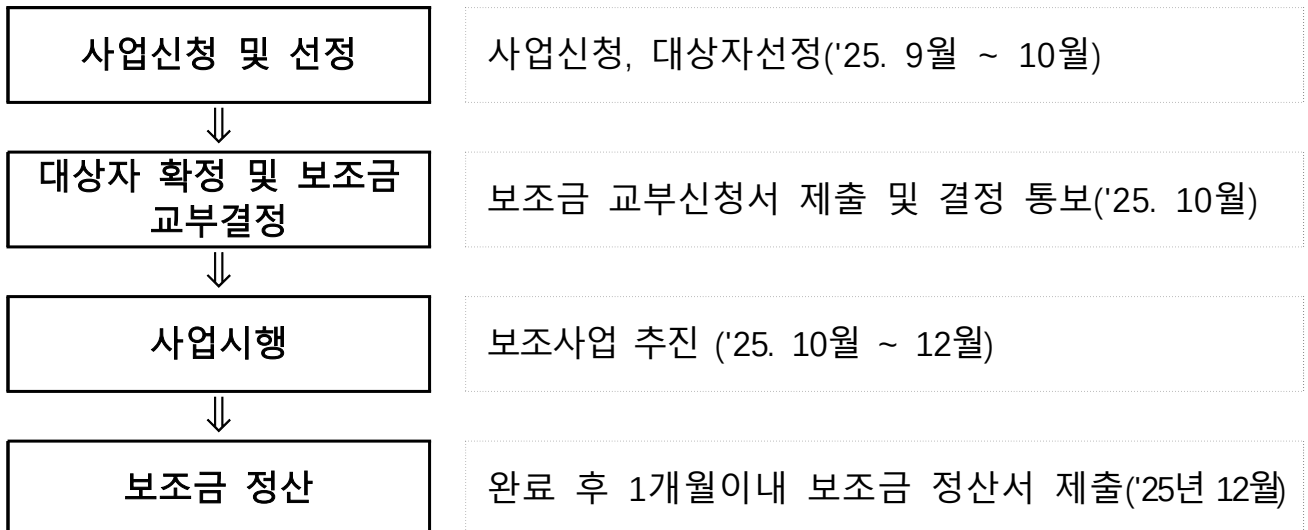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2025. 9. ~ 12.
- 사업량 : 25개소
- 지원대상
  - 1) 기본자격 :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 등록 후 공고일 현재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
  - 2)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소방·안전 시설물 필수 설치
- 지원기준 : 사업장 1개소당 10,000천원 이내
- 총사업비 : 250,000천원(시비 175,000, 자부담 75,000)
  - 보조비율 : 시비 70%, 자부담 30%
- 지원내용 : 노후화 된 민박 건축물의 개·보수 등 현대화 지원
  - 도배, 방수, 도배, 창호, 장판교체, 화장실 리모델링 등 내·외부공간
  - 민박 간판,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
  - ※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(냉장고, 세탁기 등) 구입비 지원 불가
- 지원근거
  - 1) 농어촌정비법 제81조(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·육성)
  - 2) 삼척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5조(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)
- 예산과목 : 농촌관광체험활성화, 농촌민박사업자 시설환경개선 지원, 402-01

## [지 원 배 제]

- 농어촌민박사업장이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공간이 민박영업 목적에 반하는 경우(사업주의 실거주공간 등)
-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(또는 변경신고) 되지 않은 시설(신축, 증축, 구조변경 등)
  - ※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당시 건축물대장(건축물 현황도면 포함)에 따름
-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완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
  - ※ 관계법령(예시) : 농어촌정비법,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공중위생관리법, 건축법 등
- 사업장 기준 '22년 ~ '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
- 사업장 기준 국가 또는 도(시군)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,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'24년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시 시정요구(현장조치 포함)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시정완료 하지 않은 경우
- 농어촌민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,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

## II 추진체계

### ○ 추진절차 및 일정



### III 추진요령

- 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(계좌) 신규 개설
- (신규 개설 불가 시) 보조사업 전용 통장(계좌)은 보조사업자 명의의 기존 통장(계좌) 이용 가능
  - 단, 해당 계좌는 최초 보조금 입금 전 통장 잔액 0원이어야 함.
  - 금융 범죄 피해 증가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제한으로 계좌개설 어려움 반영
- 과대 건적 및 문서위조 등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,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
-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가능
  - 부부간 명의 승계 등은「농어촌정비법」상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승계 근거가 없어 사실상 폐업으로 판단
- ※ 3년 이내 폐업 시 보조금 전액 환수(단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제외)
-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수행 시, 증·개축, 대수선 사항 발생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 준수할 것(건축법 위반 발생 시 보조금 미지급 및 회수)

### IV 사업집행 및 정산

-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 우선 집행하고 사업실적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
- 사업완료 시 1개월 내에 사업실적과 증빙자료(전자세금계산서, 공사도급계약서, 입금 확인서, 거래내역서, 전중후 사진대장 등) 첨부한 정산서 제출받아 정산검사 후 집행
-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신청 후 검토 승인 필요
- 사업비는 당해 사업 외 금융기관, 개인 채무변제 등의 사용은 불가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기타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정산

### V 행정사항

- 사업신청서 제출 : 2025. 9. 30. 까지
- 교부신청서 제출 : 2025. 10. 17. 까지
-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: 2025. 12. 15.까지